

# 자가전기통신설비의 효율적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동식\* · 임종근\* · 김기문\*

\*한국해양대학교

## A Study on the Efficient Improvement Policy of Private Network

dong-sig Lee · Jung-gyun Lim · Ki-mun Kim

\*Korea Maritime University

E-mail : leedee@lycos.co.kr

### 요 약

1994년부터 시작된 세계무역기구(WTO)의 기본통신협상에 따라 다수의 통신사업자가 통신시장에 진입하고, 특히, 1999년 1월부터는 공기업도 자회사를 통하여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자가통신설비와 관련된 규제제도는 최근까지 계속적으로 완화되어 왔다.

이와 같은 규제완화와 국내 정보통신 산업의 급속한 발달에 힘입어 일부 공기업을 비롯한 자가망 보유 회사들은 통신사업자들의 통신망이 충분히 설치된 이후에도 자체 수요에 대처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통신망 분야에 확대투자를 하여 통신사업의 진입을 직·간접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자가전기통신설비 구축은 국내 통신사업구도에도 커다란 변수로 등장하고 있으며 외국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자가통신망에 대한 국가적 정책은 정보통신망의 효율적 구축, 중복·과잉투자 방지, 공정경쟁 보장, 회계분리, 자회사 설립, 통신사업 구조조정, 국가경쟁력 강화 등 여러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가전기통신설비 현황 및 실태와 자가전기통신설비 관련 정책을 살펴보고, 외국의 자가통신망 실태와 관련 법·제도 등을 비교·분석하여 자가전기통신설비에 관련한 효율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 ABSTRACT

Construction of Private networks is becoming easier due to the openness of telecommunication market, rapidly developing telecommunication technology. The size of existing private networks is becoming huge which resulted in surplus of capacity of the networks. These trends will generate a problem of efficient use of "national telecommunication resources" and which will be a factor for the structure of domestic telecommunication market which will have a big impact on the existing telecommunication carriers.

Therefore, national policy of private network issues should be considered along with the national efforts for the information infrastructure, control of telecommunication market, fairness of competition, strength power of national competition.

In this paper it will be suggested that the efficient policy on the issue of domestic private network, by analyzing present situation, status quo, laws, regulation and procedure for domestic private networks and comparing it with those of U.S.A, Japan, EU.

### 키워드

자가전기통신설비, 자가통신망, 기간통신사업자, 가설권

### I. 서 론

21세기 들어 세계 정보통신 시장의 개방화 및 자유화의 급속한 진전과 망의 광대역화와 기술발전으로 통

신시장이 확대되고 통신사업의 역무 구분이 모호해짐에 따라 통신사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거대기업까지도 인수합병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 통신서비스 제공 사업자뿐만 아니라 다국적 기업 등 정

보통신 이용자들의 글로벌화도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90년대 통신시장이 경쟁체제를 도입한 이후 다수의 통신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하고, 특히 '97년 기간통신사업허가제도가 사전공고제에서 자유신청제로 변경되고 특히, 1999년 1월부터는 공기업도 자회사 통하하여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자가통신설비와 관련된 규제제도는 최근까지 계속적으로 완화되어 왔다.

이와 같은 규제완화와 국내 정보통신 산업의 급속한 발달에 힘입어 통신사업 진출전략으로 악용되고 있는 자가통신망을 구축하고 있는 기업은 대부분이 한국전력, 철도청,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등 공기업들이다. 이들 기업이 자체 구축한 광 네트워크에서 10%정도의 회선에 대해서만 자체용으로 사용하고 있다.[1]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기업을 비롯한 자가망 보유 회사들은 통신사업자들의 통신망이 충분히 설치된 이후에도 자체 수요에 대처한다는 명분으로 통신망 분야에 확대투자를 하여 통신사업의 진입을 직·간접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자가전기통신설비 구축은 국내 통신사업 구도에도 커다란 변수로 등장하고 있으며, 기간통신사업체와 국내 통신 시장에 이미 진출을 했거나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외국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자가통신망에 대한 국가적 정책은 정보통신망의 효율적 구축, 중복·과잉투자 방지, 공정경쟁 보장, 회계분리, 자회사 설립, 통신사업 구조조정, 국가경쟁력 강화 등 여러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문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통신사업의 일반 현황과 환경 변화를 살펴본 다음, 자가전기통신설비 현황 및 실태와 자가전기통신설비 관련 정책을 살펴보고, 외국의 자가통신망 실태와 관련 법·제도 등을 비교·분석하여 자가전기통신설비에 관련한 효율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II. 자가전기통신설비 제도 및 현황

### 1. 자가전기통신설비제도

#### 가. 자가전기통신설비의 개념

전기통신설비라 함은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 기타 전기통신에 필요한 설비”로, 사업용과 자가용으로 구분하는데 사업용 전기통신설비는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통신사업용으로 설치한 설비”이며, 자가전기통신설비는 “특정인이 자신의 전기통신에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설비”라고 정의하고 있다.[2]

#### 나. 자가통신관련 법령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 운용과 관련하여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전기통신기본법 시행규칙 등은 설치, 신고 및 승인, 설치 공사의 확인, 심사, 목적외 사용 제한, 유지보수 설비제공, 벌칙 등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설치확인을 받는다.(기본법 제20조) 설비의 목적외 사용을 일부 허용하여 관로·선조 등의 잉여설비를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기본법 제21조) 또 설비를 설치함에 있어서 형식승인을 얻은 기자재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며(기본법 제33조)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운용하여야 한다(기본법 제25조)라고 규정하고 있다.[2]

또 자가통신설비에 여유가 있는 경우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설비 제공(기본법시행령 제19조), 전기통신설비의 제공(사업법 제33조의5), 가입자 선로 공동활용(사업법 제33조의 6), 전기통신설비의 공동구축(기본법 제18조, 시행규칙3조3)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 또는 신설하여 공정경쟁 여건을 마련하고 있다.[2,3,4,5,6]

그러나 이상의 법령에서 살펴보면 현행 법령은 정규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설치승인, 원가검증, 형식승인 등의 엄격한 규칙을 적용하고 자가전기통신설비 보유자에게는 엄격한 회계규칙과 형식승인, 기술기준 등을 적용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다. 자가통신설비 관련 정책 변화

공중통신망의 보완적 존재로서 자가통신망의 위상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인식이 변화한 적은 없으나, 설비 설치자의 무리한 투자 등을 제어하지 못해 자가통신설비 인정의 기본 취지가 변질되고 있다. 다음에서 자가통신설비 관련 정책 변화과정을 살펴본다.

제 1단계('84년 이후)는 자가통신설비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는 제도를 인정하면서 공중통신발전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자가설비를 인정했으며, 2단계('91년 이후)는 통신사업 경쟁 도입에 따라 자가설비의 유희설비 중 선로설비만 제한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기 시작했다.

3단계('94년 이후)는 통신사업의 경쟁확대에 따라 자가통신설비 보유자의 진입 압력이 나타났고, CATV 활성화를 위한 한국전력의 전송망 사업 진출을 지원하는 의도가 있었으며, 이 때부터 자가설비가 급팽창함으로써 통신시장에 부담을 주었다. 4단계('95년 이후)는 자가통신설비 보유자를 실질적 통신사업자화로 초래함으로써 무분별한 통신사업 투자를 사실상 인정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5단계('99년 이후)는 공기업이 완

전 자회사를 통하여 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했다.

6단계('01년 이후)는 기간통신사업자의 허가결격사유에 정부투자기관을 제외하고, 외국인 지분 제한 완화, 회계정리, 전기통신설비의 공동구축, 가입자 선로 공동활용 등 자가설비 관련 제도에 대한 공정경쟁 여건을 마련하고 있다.

2. 자가전기통신설비 현황

표 1. 자가전기통신설비 현황[11]

설치자	설비구분	설비내역	
		설비종류	수량
한국전력	교환설비	전자교환기	571대
	선로설비	광케이블	공장8,269/ 연장164,478km
		일반케이블	-
도로공사	교환설비	전자교환기	214대
	전송설비	광단국	185대
		다중화장치	11대
	선로설비	광케이블	1,563/95,011km
		일반케이블	1,410/66,260km
철도청	교환설비	전자교환기	66대
	전송설비	광단국	242대
		PCM단국	1,131대
		다중화장치	60대
	선로설비	광케이블	522/4,092km
	일반케이블	2,753/- km	
서울지하철공사	교환설비	전자교환기	8대
	전송설비	PCM단국	10대
	선로설비	일반케이블	376/- km
서울도시철도공사	교환설비	전자교환기	6대
	전송설비	광단국 등	29대
	선로설비	광케이블	377/1,508km
	일반케이블	286/- km	
부산교통공단	교환설비	전자교환기	32대
	전송설비	광단국	29대
		PCM단국	9대
	선로설비	광케이블	136/3,118km
		일반케이블	116/6,058km
대구지하철건설본부	교환설비	전자교환기	1대
	선로설비	광케이블	84/478km
		일반케이블	30/727km
경찰청	선로설비	광케이블	1,510/3,320km
신공항고속도로	전송설비	광단국	2대
	선로설비	광케이블	44/2,847km
인천도시철도기획단	교환설비	교환기	23대
	전송설비	광단국 등	76대
	선로설비	광케이블	75/505km
	일반케이블	53/900km	

자가전기통신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곳은 대부분 공기업과 정부기관들인데 이들이 통신망의 구축에 가장 큰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는 가설권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설비의 설치가 쉽다는 점이다.

한국전력은 1983년부터 광송수신기를 설치하는 등 통신설비를 확장하여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설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여부설비를 이용하여 2000년에 파워콤이라는 자회사를 설립하여 기간통신사업자에게 회선임대 사업을 하는 등 통신시장에 진입했다.

한국도로공사는 교통시스템 관리와 통행료 징수의 자동화 등의 이유로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기 시작하였으며, 첨단 도로교통 체계구축 계획을 세워 교통관리를 원활히 하고 정보통신의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겠다는 전략이다.

철도청은 운전업무용 설비와 역무자동화 설비, 제어용 설비, 데이터전송용 설비 등의 용도로 설비를 보유하고 있다. 이 밖에도 신공항고속도로, 부산교통공단, 도시철도공사 등에서 교환설비와 광단국 장치, 광케이블 시설 등을 꾸준히 증설해 나가고 있다.

표 2. 자가설비의 광케이블 증가 현황[12]

(단위 : km)

설치자	'00.5	'02.9	업체	'00.5	'02.9
한국전력	8,269	12,030	대구지하철	84	84
도로공사	1,563	2,682	인천지하철	74	74
철도청	522	908	경찰청	1,510	1,614
서울도시철도	377	900	고속철도공단	-	188
부산교통공단	136	136	신공항고속도로	44	44

표 3. 주요기간통신사업자 광케이블 현황[12]

(단위 : km)

설치자	FTTO	전체	동축
한국통신	199,000	2,220,000	8,700
하나로통신	120,610	380,000	-
파워콤	654,800	1,427,000	48,000
G&G	17,000	306,000	-
드림라인	67,000	624,000	-
두루넷	262,000	674,000	50,500
데이콤	8,400	15,500	-
한솔아이글	-	12,000	-

3. 외국의 자가통신설비제도와 동향

가. 자가통신설비 개요

우리나라는 자가통신설비의 정의를 “특정인이 자신의 전기통신에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설비”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의 여러 나라, 그리고

일본 등에서는 대부분 “독립전기통신망” 또는 “시설전기통신망”이라 칭하면서 “개인 혹은 그룹내에서의 사용을 목적으로 통신서비스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설비”로 정의하여 자신들의 본래 사업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뿐만 아니라 공중통신 사업자에게서 임대 한 전용회선설비까지도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선진국은 전기통신서비스와 철도, 수도, 가스, 정유, 케이블방송 등을 대체 가능성이 있는 네트워크로 인식하고 이들의 효율적인 설치와 이용에 관심을 두고 있다. 유럽연합은 공공서비스회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가통신망과 기타 모든 네트워크들의 유기적인 결합을 통하여 통신망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면서 이에 대한 통합적인 정책과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전기, 가스, 수도 등의 과거 장치산업들에 대한 수입감소와 구조조정, 신규사업에의 진출을 모색하면서 특히, 통신사업에 진출하기 위한 기업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계획적이고 수직적인 망구축을 많이 하고 있다.

개발도상국들은 정보통신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취약하여 선진국의 기업들이 직접 진출하게 되면서 기술 이전 등의 조건으로 직접 투자를 허용하고 있으며, 국영 통신회사들을 민영화하면서 이들과 해외투자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개발도상국들은 통신설비의 구축이 미미한 실정

이기 때문에 자가전기통신설비로 통신시장에 진입하는 것은 아직 어려운 실정이다.

나. 통신사업 진입 현황

미국과 독일은 공기업이 통신시장에 진입하지 않고 있으며, 다른 국가의 공기업도 대부분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컨소시엄 형태로 진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13]

표 5. 공기업의 통신사업 진입 현황

국가	설비보유기업	업종	진입분야	진출형태
일본	일본도로공단	도로	전용회선	컨소시엄
	한신도로공단	도로	전용회선	컨소시엄
영국	영국국철	철도	회선임대	자회사
프랑스	SNCF	철도	부가통신	자회사
네덜란드	네덜란드철도	철도	이동통신 전화서비스	자회사
중국	전기공학산업부	전력	전화서비스	컨소시엄
	철도부	철도	부가통신	컨소시엄

다. 설치제도 및 목적의 활용 현황

자가통신설비에 대한 각국의 정책은 매우 다양한 차이점을 있다. 미국은 설치와 관련하여 신고제를 운영하면서 비교적 쉽게 자가통신설비를 설치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연방통신위원회에서 정한 기술기준에만 적합하면 공공망과의 접속과 통신시장으로의 진출도 허용하고 있다. 영국은 자가통신설비의 설치를 소방, 경찰 업무 등을 제외한 민간용의 경우 엄격한 기준을 두고 허가제를 운영하면서 대체로 공공망과의 접속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그리고 독일, 벨기에, 포르투갈,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은 자가통신설비의 공공망 접속을 불허하고 있으며, 특히 포르투갈은 통신시장 진출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의 경우 공공망에 자가통신설비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공공망의 접속이 허가되는 제 3의 면허를 취득하거나 일반통신사업자 면허를 취득하여야 한다.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국가들이 자가통신망의 통신시장 진출을 엄격한 회계분리를 조건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통신시장에 진출하고자 할 때에는 자가통신 면허를 일반 통신사업자 면허로 재등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13]

각 국가들이 자회사 형태의 통신시장 진입만을 허용하거나 또는 통신사업자로 재등록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전력, 철도 등의 목적사업에서 얻은 이윤을 목적 외 사업 즉 통신산업으로 보조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또한 통신서비스 제공사업자로 새롭게 등록할

표 4. 일반기업의 통신사업 진입 현황

국가	설비보유기업	업종	진입분야	진출형태
미국	Pacificcorp	전력	이동통신	자회사
	Montana	전력	회선임대	자회사
	SCANA	전력	회선임대	자회사
	Western Union	철도	회선임대	자회사
일본	일본국철	철도	전용회선 전화서비스	컨소시엄
	동경전력	전력	전용회선 이동통신	컨소시엄
영국	National Grid	전력	기본통신 기업내통신	컨소시엄
프랑스	Cofrioute	도로	회선임대	자회사
	CGE	수도	시내전화 이동통신	자회사
네덜란드	Energis	전력	회선임대 교환서비스	컨소시엄
독일	VEBA	전력	부가통신 이동통신	자회사
	REW	전력	기업통신 이동통신	컨소시엄
	Deutsche Bahm	철도	회선임대 이동통신	자회사

것을 요구하는 것은 자가통신사업자가 기간통신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규제가 자가통신사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점을 악용할 여지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표 6. 설치제도 및 통신시장 진출조건

국가	설치제	공공망 접속	시장진출	조건
미국	신고제	조건부	허용	면제통신사업자 허가/자회사형태/회계분리
일본	신고제	조건부	허용	자회사형태
영국	허가제	조건부	허용	일반통신사업자 면허
독일	허가제	불허	허용	4종 면허취득
프랑스	신고제	조건부	허용	회계분리/장부보존
네덜란드	허가제	조건부	허용	회계분리/자회사형태
포르투갈	허가제	불허	금지	-
벨기에	신고제	불허	허용	일반통신사업자 면허
중국	N/A	N/A	허용	국가기관과 협의
싱가포르	신고제	불허	허용	일반통신사업자 면허
인도네시아	신고제	불허	허용	일반통신사업자 면허

### III. 자가전기통신설비 관련 문제점 분석

#### 1. 자가설비제도의 기본취지 왜곡

첫째, 공중망의 보완이 아닌 공중망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자가설비는 공중망의 예외적 경우로 사업용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한정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자가설비보유자는 자가용의 설비투자보다는 통신사업용의 시설투자로서 여유설비를 발생시켜 임대함을 주목표로 하고 있어 통신사업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둘째, 자가설비보유자로서 변칙적 통신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가설비 보유자는 여유설비 제

표 7. 기간통신사업자와 자가설비보유자의 권리와 의무 비교

구분	기간통신사업자(설비임대)	자가설비보유자
권리	역무제공	실질적 역무제공
의무 및 부담	출연금(일시, 연도별)	없음
	설비구축(승인, 신고)	확인
	공정경쟁등 강력한 규제	실질적 규제 없음
	보편적 서비스 의무	없음

공제도를 이용하여 실질적으로 기간통신사업자에게 광케이블 설비를 신규로 구축·제공하는 등 회선임대 사업자와 같은 사업영역을 구축하고 있지만 반면에 기간통신사업자는 엄격한 허가를 받아 진입하며 출연금 부담 등 많은 공적 부담 및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 2. 여유설비의 제공 허용으로 과잉투자 유발

여유설비의 제공 제한 규제가 해제된 '97년 이후 특히 막대한 설비를 구축했다. 이것은 일시에 막대한 설비가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여유설비를 제공하기 위한 과잉투자가 분명하다. 한국도로공사의 경우 '93년 311km, '97년 630km이던 것이 '00년 1,563km로 '02년 9월 현재 2,682km가 설치되어 있다.[14]

여유설비의 판단은 자의적이며 통제가 불가능한 개념으로 여유설비의 설비제공 인정은 실질적으로 자가설비에 대한 규제를 포기한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다. 통신설비 자체가 어느 정도 여유설비가 필요한 것인데 여유설비가 있다하여 설비를 제공한다면, 다시 여유설비를 보유하기 위해 투자하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다. 자가통신설비를 신고로 설치할 수 있는 상황에서 여유설비의 무제한 제공 허용은 필연적으로 과잉투자를 초래하고 있다. 자가설비 보유자인 독점 공기업이 초과이익의 유출창구로 자가설비 구축을 활용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 3. 비경제적 투자로 목적사업 약화

첫째, 일정량을 초과하는 자가설비의 존재는 유지·보수 비용의 부담으로 공중망 이용의 경우보다 비효율적이고 비경제적이다. 아웃소싱을 할 경우가 경제적이면서도 불구하고 통신사업 진출을 목적으로 독점이익을 이용해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둘째, 무리한 자가설비 투자로 목적사업의 약화를 초래한다. 독점이익을 배경으로 장래에 통신사업에 진출하기 위한 기반으로 투자를 하고, 또 독점부분의 초과이익을 극심한 경쟁 분야인 통신사업에 투자를 하게 되는데, 결국 독점부분의 요금인상 및 통신시장의 경쟁을 왜곡시키게 된다.

#### 4. 통신사업 민영화 및 공정경쟁 저해

첫째, 통신시장 민영화 및 경쟁체제 도입은 공공부분의 정부간섭을 줄여 민간의 효율성과 창의성을 시장에 도입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독점 공기업은 이를 통신사업 진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는 정부의 일관된 의지를 의심케 하여 정책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90년 이후 독점사업자였던 KT의 정부지분 축소 28.4%, 외국인지분 확대(33%→49%) 등 민영화 노력이 계속되고 있으나 아직 만족할 만한 상

황이 아니다. 둘째, 통신시장에 있어 공기업간 경쟁은 공기업 설립의 목적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독점 공기업이 경쟁시장의 공기업과 경쟁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민영화와 경쟁은 통신사업의 주된 흐름이기 때문이다.

**5. 공기업 구조조정에 역행**

첫째, 기업구조조정에 공공부문은 역행을 하고 있다. 정부는 비 핵심사업인 통신사업에의 치중하지 말고 핵심 사업에 역량을 집중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나 독점적 공기업의 부분별한 통신사업 투자에 대한 제도적 방지책 마련에는 소극적이다. 둘째, 불필요한 조직과 인력의 유지로 비효율을 가중시키고 있다. 파워콤 설립이전에 한국전력의 경우 통신부문 투자에 대한 근본 이유 중 하나는 주사업 부문의 경우 정부의 통제로 조직 및 인력의 확대가 곤란하기 때문에 이의 추구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아웃소싱 할 경우 절약할 수 있는 고정비용의 막대한 지출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의 해소를 위해 설비제공, 통신사업 진출을 시도하는 악순환이 아직도 일부 공기업에서 계속되고 있다.

**6. 가설권(rights of way)의 독점 문제**

첫째, 가설권 관련 제도 현황(전기통신기본법 제30조의 2)을 살펴보면 도로, 철도 등 시설을 조성시 해당 시설설치자는 공동구 또는 관로 등 설치를 위한 기간통신사업자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는 노력의무를 가지며, 기간사업자와 설치자간 합의 불가시 정보통신부장관에 조정요청이 가능하고 정보통신부 장관은 건교부 장관과 사전 협의 후 조정 가능하도록 하고는 있으나, 조정결과에 대한 강제성은 없다. 둘째, 공기업의 가설권 이용의 독점을 추구하고 있다. 가설권은 공공자원적 성격으로 시설 설치자가 독점해서는 안되며 공공적 용도에 차별적으로 이용되어야 하지만, 설비를 독점하고자 한다. 셋째, 통신사업 진입수단이 되고 있는 자가설비제도가 근본 원인이다. 자가설비 구축을 통한 통신시장 진입이 목적이기 때문에 가설권이 보장되지 않는 실정이다.[17]

**VI. 자가전기통신설비 관련 개선 방안**

**1. 단기적으로 필요한 조치**

- 공기업 보유설비 용량 및 신·중설계획의 투명한 공개가 바람직함
- 기간통신사업자가 아니더라도 통신설비를 보유하고 기간통신서비스에 준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기업에 대하여 엄격한 규제를 적용해야 함

- 자가전기통신설비 보유자의 불공정행위에 대하여 통신위원회가 시정 조치할 수 있는 적절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

**2. 자가통신설비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사항**

- 세계적인 규제개혁 조류에 따라 현재의 신고제가 바람직함
- 공공망과의 접속은 허용을 하되 특별한 경우에 한정해야 함

**3. 목적외 사용 관련 제도**

- 여유설비에 한하여 제공을 허용한다는 조항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계속적이 조사가 불가능하고 또 관측 가능한 변수가 아니기 때문에 관측자의 자의적인 판단이 되기 쉽기 때문이다.
- 목적외 사용을 계속 허용할 경우에는 통신망 설치에 관한 조정기구가 필요함
- 기존 설비활용에 대한 예외 인정과 같은 특혜적 규정, 차별적 규제요소를 제거해야 함
-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설비제공 문제는 목적외 사용제한 개념보다는 가설권 제도와 공공자원 활용 차원에서 재접근 해야함

**4. 공정 경쟁 관련**

- 기간통신사업자와 자가설비보유자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명확한 구분이 필요함
- 자회사 설립, 회계분리, 기타 정확한 회선 임대비 산정과 회선사용에 대한 적정한 원가 측정 등이 바람직함

**5. 자가전기통신설비 보유 공기업의 기간통신사업 진출 관련**

- 분리자회사 또는 별도의 재단설립에 의한 진입만을 허용하고 본 사업체의 직접진입은 금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 회계분리 및 상호보조 금지를 엄격하게 적용해야 함
- 보유설비의 직접활용 또는 현물투자는 본 사업체와 통신사업부문간 구조분리와 자가전기통신설비와 사업용설비의 엄격한 분리, 명확한 설비원가 산정 등을 전제로 허용해야 함

**6. 가설권(Rights-of-Way)제도 관련**

- 공기업의 공공설비 정의 및 배타적 영업설비와의 명확한 구분 실시가 바람직함
- 국가적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관련법(도로, 철도, 통신, 전기, 가스, 수도 등)상의 가설권 제공과 통신기반시설의 공동구축 의무화 추진이 필요함

• RoW 이용제도, 유지 및 고도화, 거래제도에 대한 체계적인 규정의 검토가 필요함

## V. 결 론

앞으로 통신서비스시장은 음성과 데이터, 유선과 무선, 통신과 방송 등 별도의 통신 고유영역이 퇴색되면서 서비스간 융합이 급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통신서비스시장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통신자원의 효율적 활용, 공기업 민영화 및 구조조정,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과당경쟁 방지, 법과 제도의 보완·정비, 기술개발 등을 지속적이고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여유로 본 논문에서는 자가전기통신설비와 관련된 국내·외 제도와 현황을 살펴보고 현재 문제점을 분석하여 효율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 참고문헌

- [1] 전자신문, 2000.7.3
- [2] 법률 제6656호 전기통신기본법, 2002.2.4
- [3] 대통령령 제17659호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2002. 6. 29.
- [4] 정보통신부령 제133호 전기통신기본법 시행규칙, 2002. 8. 2.
- [5] 법률 제6360호 전기통신사업법, 2001. 1. 16.
- [6] 대통령령 제17327호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2001. 6. 12.
- [7] 정보통신부령 제111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2001. 4. 23.
- [8] 법률 제6358호 정보통신공사업법, 2001. 1. 16.
- [9] 대통령령 제17284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2001. 6. 30.
- [10] 정보통신부령 제112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2001. 7. 3.
- [11] 자료, 자가전기통신설비제도 개선, 2000, 한국통신.
- [12] 자료,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2002. 10.
- [13] 이명호, “디지털 경제에 부응하는 정보통신 법령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정보통신 대학교대학원, 2001. 3.
- [14] 노대전, “바람직한 자가전기통신설비제도 정착방안”, 한국통신, 1999. 11.
- [15] [http://www.ktoa.or.kr/data/data\\_view.php?pk=454](http://www.ktoa.or.kr/data/data_view.php?pk=454)(정보통신사업자연합회 -정보통신자료실-회보통신연합-회보통신연합 제20호, “통신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 이기주).
- [16] 정보통신부령 제116호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2001. 8. 27.
- [17] 김윤배, 이희상, 노승중, “국내외 자가전기통신설비의 현황과 정책과제”, 정보통신정책 ISSUE, 제 10권 1호 통권 95호, 정보통신 정책연구원, 1998
- [18] 정보통신부, 정보통신백서, 1998.
- [19] 김상택외 4인, “자가통신설비의 목적외 활용제도 개선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998. 12.
- [20] 정보통신부고시 제 2002-20호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 2002. 4. 20.